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8 | 2026.11.16. (2026.11.9. ~ 2026.11.1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상법 개정의 취지와 국제적 정합성, 금융권 운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공사대금 정보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시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포함하고, 업무 · 능력 및 경영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정보보호투자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400만원부터 1천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위반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21인)」,**

우리 기업 등 특허출원인이 사소한 실수로 우선권 주장 기간 등을 놓쳐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특허 절차 기준에 맞게 일정 기간 우선권 주장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 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간주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범위를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특별법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이동로봇의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재경위>, <과방위>, <국방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예결위> 등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 8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지식재산처)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 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12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2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4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공정거래위원회) ·····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 18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 1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 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 2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 2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21인) ····· 22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 23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2인) ····· 2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 24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 2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 2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 26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 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28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8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 2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 2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 30
-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의원 등 11인) ····· 30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문정복의원 등 10인) ····· 3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3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 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 32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8인) ····· 33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종면의원 등 10인) ····· 3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1인) ····· 3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AI 기반 토지개발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공개, 2027년 1월 시범운영 개시
- **[에너지 · 인프라]**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지식재산권]**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에너지 · 인프라]**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동향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이용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자율형 인공지능 철통 인증 안내서」 발간
-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외국법상 펀드(글로벌 펀드) 결성·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고유업무로 인정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문 260150)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검토사항
- **[공정거래]** '인공지능(AI) 광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표시광고법 적용 구체화 및 업종별 AI 활용 광고 금지
-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신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른 노동법제 개편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 임추위 및 승계절차의 독립성 강화로 CEO의 참호구축 원천 차단 -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을 통한 장기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 혁파 -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 -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2026-11-12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회복 및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최근 상법 개정의 취지와 국제적 정합성, 금융권 운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임추위 및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여 CEO의 참호 구축을 원천적으로 차단

CEO가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함 ▲CEO 후보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現 CEO가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 ▲現 CEO가 차기 CEO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제재를 신설하고, 경영승계절차 중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임원후보 추천업무에 대한 임추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❶주주총회(이하 '주총') 소집 시 후보 추천사유에 임추위 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 ❷임추위원장이 후보 추천사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 ❸임추위원장에게는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적용

둘째,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 등을 통한 장기연임 관행을 전면 개선

소유가 분산되어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 CEO의 경영승계절차에 대해 주주 및 임추위의 통제를 강화 ▲은행지주 CEO는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연임 과정에서 임추위 및 주총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 ❶현행 규정상 임추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사위원 추천에 준하여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3/4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❷현행 규정상 CEO는 사내이사로서 주총에서는 출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발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선임되나, '1회 연임 시'에는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 '2회 이상 연임 시'에는 3/4 이상(발행주식총수 1/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여 주주에 의한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강화

셋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

기관투자자 등이 새로 도입되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주주·시장 중심의 감시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금융회사 이사회(독립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

넷째,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 ▲그간 주총에서는 이사들의 보수총액만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例: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Say-on-Pay)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상위 임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성과)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보수와 성과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시도 강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 구축 - 지식재산 실거래 정보 공개, 인공지능 기술로 가치평가 5분 만에 -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연내 선정 완료	2026-11-10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음.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①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공개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 • 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 • 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롭게 구축함.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함. 분산된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임. 또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임

② 지식재산거래소 개편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함.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임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확대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함

③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공략 본격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원에 달하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하여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도움. 이에 더하여,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임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통제탑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23 시행 예정

제조업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등의 경우를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복귀'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및 국내 공급망 안정 관련 분야의 주요 생산시설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제품의 실증생산 또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복귀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7-07-01 시행 예정

이직이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에서, 2027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는 500명 이상인 사업주로, 2029년 7월 이후에는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그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 및 휴가 부여 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하려는 것임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27 시행 예정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의 확대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범위를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인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의 통지 기한을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2 시행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778호, 2026.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2 시행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확대 또는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절차 및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2 시행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중 방첩·대테러 정보의 수집 및 국가기밀의 취급 등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평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3 시행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일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수요상황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7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수요상황 사전 파악의 대상 및 방법, 사전 청약의 대상·기준 및 방법과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10. ~2026.12.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시설을 이전하거나 그 이전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작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12. ~2026.12.2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 정비 (안 별표 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성화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13. ~2026.12.01.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등의 거래와 관련된 표시·광고 기준은 없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를 위한 표시·광고시에 명시할 사항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부당한 표시·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및 신고관청이 효과·효율적인 거래조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공포(2026.6.16.)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등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 정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 목적으로 타인에게 거래 관련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부동산등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등”으로 구체화하며,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유형을 표시·광고 대상 부동산등이 “거래 불가능하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거나, 중요사항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관청의 거래신고, 취득·보유신고 및 임대차신고 내용 조사업무 관련 구체적인 위탁사항 및 위탁 가능기관(한국부동산원)을 명시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7,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9. ~2026.11.23.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다만, 현행 법령상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도체 공장 입지가 가능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공 주도 사업에 한해 특례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 규모를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특례가 적용 제외되는 산업단지 규모를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호가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044-201-366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9. ~2026.12.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6. 9. 8., 법률 제21894호)에 따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공사대금 정보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전화: 044-201-3511, 팩스: 044-201-554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026.11.06. ~2026.11.26.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① 다크패턴 규제 중 취소·탈퇴 방해 관련 해석기준 보완 (안 Ⅱ.일반사항 14. 및 Ⅲ.권고사항 7.개정)

- 취소·탈퇴 절차가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게시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가입 버튼이 사이버몰 첫 화면에 있음에도 탈퇴 버튼은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에 있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
- 회원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 중 구매·가입에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를 계속할 수 없도록 취소·탈퇴 절차를 설계하는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

②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명시 (안 Ⅱ.일반사항 10. 개정)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없음을 명시

③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과도한 스크롤 지양 (안 Ⅲ.권고사항 7. 개정)

- 소비자가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해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해당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 지양 권고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449, 팩스: 044-200-523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 조치의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및 제75조제4항제9호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자진신고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6-11-11 발의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 협상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기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2026-11-11 발의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수공시는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임원이 종속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실질적인 총 보수 규모가 공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장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는 연결실체의 비용으로서 지배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 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차별적으로 편중 수령되는 등 주주평등원칙 훼손 및 시장 감시기능의 공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종속회사 등에서 보수, 고문료 또는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법인별 내역과 개인별 합산총액 및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우회적인 이익 이전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시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포함하고, 업무·능력 및 경영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과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등 재산상 이익의 개인별 합산총액, 지급 법인별·항목별 금액, 실제 수행 직무 및 산정기준을 금액과 순위에 관계없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2026-11-12 발의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공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운용의 견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제29조의12 신설)**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11-13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거래방식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금세탁방지체계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과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신규 거래 시 위험평가·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2026-11-09 발의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90조제1항제4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6-11-09 발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활용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와 임대용 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목적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한편, 전력사용량 및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26-11-11 발의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되었음. OECD의 법정 법인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산한 법정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평균 24.2%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임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세로서,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고용 확대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의 일률적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여 2026년 인상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026-11-12 발의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적격 품목의 생산량에 기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함에 따라, 조기에 공제한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생산지역에 따른 공제 우대비율이 총 공제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우대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하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적격품목을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최초 적용된 2020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소를 허용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2026-11-1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보호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의 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도 없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보호투자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400만원부터 1천 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9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21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위하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전기통신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 (안 제52조의3제1항)

②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 (안 제53조제1항)

③ 개정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 **2026-11-13 발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장기 미실시 상태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은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또는 납부 기한의 유예, 매출액 기준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2인)** | **2026-11-1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러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제도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조형물 설치 기회 등이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해외 작가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우 국내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배분 등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보수 및 철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2026-11-11 발의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와, 국내에 먼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선출원의 출원일을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일로 보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약 당사국에 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국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특허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보정도 할 수 없음

한편,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등 주요국은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고의로 우선권 주장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허에 관한 국제 절차인 특허법 조약(PLT)에서도 특허출원 시 누락한 우선권 주장을 일정 기간 내에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등 특허출원인이 사소한 실수로 우선권 주장 기간 등을 놓쳐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특허 절차 기준에 맞게 일정 기간 우선권 주장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2026-11-09 발의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하였음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영업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과 같이 무과실 피해구제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2026-11-11 발의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9조의4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의18 및 제85조의4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6-11-09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7조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2026-11-09 발의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제1항)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퇴직자·재직자를 막론하고 지연이자 체불의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이 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체불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이중적 행정을 보이고 있음

이에 이 법상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체불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7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자가 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회는 지난 2017년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당시 고용노동부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26. 11. 23.)에서 난임을 질병의 일종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난임휴가의 도입 목적에 대하여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꼽았음

이에 **육아휴직 간주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범위를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11-10 발의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간이나 많은 수준임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뇌심혈관질환, 자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연구보고서(2024)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및 △성과 압박·해고 위협·조직 변화와 같은 심리적·조직적 요인은 과로사·과로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의 측정 △심리사회적 요인의 포괄적 분석 △직무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장시간 근로 관련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우리나라 역시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등의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장 단위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으며, 단편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지원책을 구축해야 함. 최근 국회 입법공청회(2026. 3. 26.) 등 지속적인 입법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포괄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특별법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2026-11-11 발의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임에도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REC 구매 의무가 부과되어 원자력 발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제외**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5제2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2026-11-11 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안 제61조 및 제16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2026-11-09 발의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체불 및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기사의 대가 지급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2026-11-09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수요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최근 배송·순찰·안내·주차·건설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로봇 관련 법령은 기술개발·인증·보급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분야별·사안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어 이동로봇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로봇의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문정복의원 등 10인)	2026-11-10 발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네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4차 특례법(2012년~2020년)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4차 특례법 시행 기간 중 공동주택단지 내 전국 1,200여 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대다수가 분할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공유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공유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어 다수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여전히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종전 특례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의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 사이에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 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실제 시공금액이 감소해 품질 및 안전 확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제도적 안착과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 공사 등에 대한 상호 시장 진출 제한 등 부칙(제2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소·전문건설업체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유효기간 내에 시장 환경의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및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2026-11-10 발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이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25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11-11 발의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 또는 그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해 계획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이익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획이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획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관리·사용체계 및 계획이익 환수의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 등)**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8인)

2026-11-12 발의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수립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3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026-11-12 발의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분산,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지역의 행정·경제·교통·생활의 중심지로 기능해 온 원도심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상권의 침체, 인구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주민의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원도심의 쇠퇴는 개별 건축물의 정비나 노후시설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편의시설 정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아울러 원도심은 지역마다 형성 과정과 도시구조, 산업·상업 기능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 획일적인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재정적 지원 및 사업절차의 효율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1인)	2026-11-13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이러한 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허가를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가 신규등록 전에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6-11-10 발의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11/16(월) 10:00	- 법안 심사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11/19(목) 10:00	- 법안 심사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11/20(금) 10:00	- 디지털재난 안전관리 제정법 관련 공청회, 법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11/16(월) 14:00	- 2027년 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전체회의	11/18(수) 10:00	-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소위	11/16(월) 10:00	- 2027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8(수) 14:00	- 2027년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국토위	예산결산소위	11/16(월) 10:00	- 2027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8(수) 10:00	- 2027년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예결위	소위원회	11/16(월) 10:00	- 2027년 예산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6(월) 10:00	**기본사회 국가의 기본을 제안하다**	박주민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1/16(월) 14:00	**푸드테크산업법 제정 1년 성과 및 발전방향**	김선교·윤준병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7(화) 10:00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김장겸·강명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8(수) 09:00	**K-제약·바이오 초격차 전략**	김윤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11/18(수) 10:00	**AI 시대에 데이터과학·기초과학 역량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역할**	황정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8(수) 14:00	**석탄화력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8(수) 14:00	**출근이 무서워요. 노동자가 위험하다!**	김교흥·윤재옥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9(목) 14:30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보험의 역할**	김소희·박정현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0(금) 10:00	**국가 대전략 학술회의**	성일종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11/16(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4호(통권 제38호)**	국회도서관	
	11/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3호(통권 제311호)**		
	11/18(수)	**「금주의 서평」 제2026-44호(통권 제803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9(월)	「Data+」 제2026-18호(통권 제42호)	국회도서관	
	11/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2호(통권 제310호)		
	11/11(수)	「금주의 서평」 제2026-43호(통권 제80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9(월)	방송통신 (TMT)	AI 기반 토지개발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공개, 2027년 1월 시범운영 개시
11/9(월)	에너지·인프라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11/10(화)	지식재산권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10(화)	에너지·인프라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11/11(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동향
11/11(수)	방송통신 (TMT)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이용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자율형 인공지능 철통 인증 안내서」 발간
11/11(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외국법상 펀드(글로벌 펀드) 결성·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고유업무로 인정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문 260150)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검토사항
11/11(수)	공정거래	'인공지능(AI) 광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표시광고법 적용 구체화 및 업종별 AI 활용 광고 금지
11/12(목)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신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른 노동법제 개편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